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74

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 박성민·강민국·안상훈

박정하 · 최형두 · 서일준

김상욱 • 이헌승 • 구자근

박성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서, 2003년 인천에 처음지정된 이후 부산진해, 광양만권, 대구경북, 경기, 강원, 충북, 광주, 울산 등 현재 총 9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·운영되고 있음.

경제자유구역은 20여 년을 지속 성장하여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271.4km 면적에 약 8천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23만여 명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거점이 되었으나, 새로운 신산업의 부상,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, 리쇼어링·프렌드쇼어링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경제자유구역도 변화해야 하는 시점임.

특히,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 · 연구개발특구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,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,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확대, 입주기업 지원시설·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여,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고 우리나라의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경제자유구역 내 타법에 따른 중복절차 간소화(안 제4조제4항, 제7 조의6제1항, 제11조제1항)
 - 1) 기 지정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 절차인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
 - 2)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
 - 3)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
- 나. 경제자유구역의 관리·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(안 제 9조제6항, 제27조의4, 제27조의8)
 - 1)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기존 개발사업시행자가 부재한 경

- 우 시 ·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
- 2) 경제자유구역 내의 규제 혁신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확대하고, 규제자유특구 신청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도 부여
- 다.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(안 제9조의8제1항, 제18조제2항)
 - 1)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유지·관리 비용까지 확대
 - 2) 경제자유구역 내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입주기 업 지원시설, 문화시설 설치 지원근거 마련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전단 중 "지정한다"를 "지정한다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제7조의6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 계획

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·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.

제9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의8제1항제2호 중 "설치비용"을 "설치 및 유지·관리 비용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0. 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

제13조제2항 단서 중 "기간"을 "개발사업의 시행기간"으로 한다.

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7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중 "법 제18조"를 각각 "법 제18조제1 항"으로 한다.

제27조의4제4호 중 "발굴"을 "발굴 및 지원"으로 한다.

제2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8(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)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)	제4조(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	4
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	
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	
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	
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	
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	
제자유구역을 <u>지정한다</u> . 이 경	<u>지정한다(「산업입</u>
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	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
의 지정을 요청한 시·도지사의	조,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
의견을 들어야 한다.	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는 제외
	한다)
⑤ ~ ⑨ (생 략)	⑤ ~ ⑨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6(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	제7조의6(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
계획의 변경) ① 경제자유구역	계획의 변경) ①
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	
립・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	
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	
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	
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	
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 이 경우	

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 • 변 경・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 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.

1. ~ 11. (생 략) <신 설>

② (생략)

시계획의 승인) ① ~ ⑤ (생 략)

<신 설>

제9조의2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제9조의2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① (생 략)

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1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· 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

	 - $ -$	 	 - $ -$
	 - $ -$	 	 - $ -$
_			
•			

- 1. ~ 11. (현행과 같음)
- 12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계획
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9조(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 제9조(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 시계획의 승인) ① ~ ⑤ (현행 과 같음)
 -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·도지 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 다.

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불구하고 해당 시·도지사가 결 정한다.

- 제9조의8(개발이익의 재투자) ①
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<u>설치</u> 비용에의 충당
 - ② · ③ (생략)
- 제11조(인가・허가 등의 의제)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・인가・지정・승인 ·협의 및 신고 등(이하 "허가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것으로 보며,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.

제9조의8(개발이익의 재투자) ①
 1. (현행과 같음)
2 설치
및 유지·관리 비용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인가ㆍ허가 등의 의제) ①
제11조(인가·허가 등의 의제) ①

1. ~ 39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~ ⑤ (생 략)제13조(토지수용) ① (생 략)

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 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「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, 재결(裁決)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 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 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 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 시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

1. ~ 39. (현행과 같음) 40. 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 획의 승인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3조(토지수용) ① (현행과 같 음)

보며,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<u>기간</u> 내에 하여야 한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18조(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 원) (생 략)

<신 설>

제27조(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) ① 경제자유구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·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. 다만, 제7호,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15. (생략) 16. 삭제

	개발사업의 시행
	<u>기간</u>
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	18조(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
	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
	같음)
	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
	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그
	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원
	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을
	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
	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제	27조(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
	리 특례) ①
	1. ~ 15. (현행과 같음)

1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한 법률」 제47조, 제56조부터
제58조까지, 제60조부터 제65
조까지, 제85조, 제86조, 제89
조, 제130조, 제133조, 제136
조, 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
른 도시・군계획시설부지의
매수청구, 개발행위의 허가,
도시・군계획시설사업의 시
행,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,
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, 토
지에의 출입, 청문, 보고ㆍ검
사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등
에 관한 사무(도시 · 군계획시
설부지의 매수청구, 단계별 집
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・군계
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
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
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
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・군
계획시설 및 이 <u>법 제18조</u> 에
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
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
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)
18. 「도로법」 제10조, 제19조,

17
H - 1110고 -111
<u>법 제18조제1</u>
<u>항</u>
18
10.

제21조, 제25조,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도·시도· 군도의 신설, 도로구역의 결 정, 접도구역의 지정 등에 관 한 사무(이 법 제9조의 실시계 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<u>법 제18조</u>에 따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 한 사무만 해당한다)

19. ~ 27. (생략)

② (생략)

- 제27조의4(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)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~ 3. (생략)
 - 4.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<u>발굴</u>에 관 한 사항

5. ~ 9. (생 략) <신 설>

법 제18조제1항
<u>日 7年10年7年8</u>
10 97 (ᅯ레리 가야)
19. ~ 27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27조의4(경제자유구역청의 업
무)
1. ~ 3. (현행과 같음)
4
발굴 및 지
<u> </u>
5. ~ 9. (현행과 같음)
제27조의8(규제자유특구에 대한
특례)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
자유구역에 대해서는 「규제자
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
관한 규제특례법」 제72조에도

불구하고 시·도지사와 협의하 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 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